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2024.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

# 1. 보고서 작성 안내

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 스스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지배구조 핵심 원칙 10가지에 대하여 준수여부를 밝히고 설명하는 CoE (Comply or Explain)방식의 보고서입니다.

1. 각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에 대하여 기업은 지배구조체계, 관련 제도 채택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밝혀야 합니다.
2. 기업이 해당 원칙에 대해 '준수' 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와 개선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3. '미준수'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배구조 현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각 원칙은 국제규범 등에 따라 상장회사들에게 모범적으로 권장되는 지배구조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영철학에 따라서 주주의 이익이나 회사의 경쟁력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정책을 회사 스스로 마련하였거나 계획 중일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핵심원칙 '준수' 여부에 과도하게 매몰되기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운영 방향과 계획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세부)원칙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에 기업 스스로 경영환경에 맞추어 시행중인 정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 사항에 대해 모두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제시된 표는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충분한 설명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원칙이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원칙의 내용에 부가적인 설명이나 표나 도표를 추가하여 자유롭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에서 기재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및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V.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책, 기준 또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은 ① 규정, 지침, 강령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적용 범위, 목표, 주요 내용 등을 명시한 별도의 성문자료가 존재하거나 ②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표된 구체적인 정책 자료 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1. 대부분의 사내 규정은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시하실 때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과 관련한 정책,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공시하신 경우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 등의 명칭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령상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사항들 혹은 정관 등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위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정책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V. 보고서 작성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회사의 결산월과 관계 없이 직전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현황이며, 모든 공시의무 대상 법인은 5월 31일까지 공시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다만, 직전연도 말일부터 해당연도 공시제출일까지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본문에 적절한 설명이 되었다면 핵심지표 준수여부 판단에도 변경 또는 개선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5월31일까지 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임시저장’된 내용은 공시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 대상 법인이 5월 31일까지 공시제출을 하지 않으면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 2. 각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별 기재사항

## 1. 기업 개요

1. 기업명 :

2. 공시대상 기간<sup>1)</sup>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sup>2)</sup> :

-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
-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sup>3)</sup>

구 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회계기간 종료일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sup>4)</sup>	실무자 <sup>5)</sup>
성명 :	성명 :
직급 :	직급 :
부서 :	부서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이메일 :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 기간은 직전연도 초일부터 말일임

2)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말일이며, 직전연도 말일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중요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경우 서술의 기준이 되는 날을 명시

3) 지배구조 보고서 일부 표에서 입력되는 당기/전기/전전기와 관련한 결산·배당 관련 등 정보의 기간 값으로 적용

4) 상장기업 공시 책임자 (ESG 등 관련 부서 담당자 아님)

5) 향후 거래소 점검 과정 등 안내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연락점이 될 수 있는 자로 각 기업 공시 담당자와 다를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실무자 지정을 권장

4. <표 1-0-0 : 기업개요 6) >

최대주주 등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소액주주 지분율(%)		
업종	주요 제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기업집단명			
<b>요약 재무현황</b> (단위 : 백만원)			
구 분 7)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연결) 영업이익			
(연결) 당기순이익			
(연결) 자산총액			
별도 자산총액			

6) 보고서 작성 기준일로 따로 계상할 필요 없이 최근 공시한 정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7) 가장 좌측에 최근 결산기 정보를 입력하되 결산 정보가 3개 사업연도 미만인 경우 공란으로 유지(공백)

## 5.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sup>8)</sup>

준수율<sup>9)</sup>: %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sup>10)</sup>			
전자투표 실시 <sup>10)</sup>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sup>10)</sup>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sup>11)</sup>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sup>11)</sup>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sup>11)</sup>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8)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II.기업지배구조 현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준수여부를 판단하며, 보고서 본문에 판단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9) 공시대상기간 중 전체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준수항목의 비율

10)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판단

11)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sup>12)</sup>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2) 경영 투명성, 경영 건전성, 경영 안정성, 견제와 균형 추구 등 회사가 가진 지배구조 운영 철학

## 2. 주주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sup>13)</sup>

<표 1-1-1 : 주주총회 개최 정보 >

		XX+1기 정기 주주총회	1차 임시 주주총회	XX기 정기 주주총회	...
정기 주총 여부					
소집결의일					
소집공고일					
주주총회 개최일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개최장소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외국인 주주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여부				
	통지방법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현황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현황				
	주주발언 주요 내용 <sup>14)</sup>				

13)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 가장 최근에 개최된 총회를 좌측부터 기재

14) 발언자(기관/개인 등) 및 발언 요지(반대 근거 등) 서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sup>15)</sup>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sup>16)</sup>

---

15) 주주총회 소집'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

16) 가이드라인 제시 외 회사가 특별히 추진하는 정책 등(이하 같음)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17)

구 분	N+2기 (20X3년)	N+1기 (20X2년)	N기 (20X1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sup>18)</sup>			
정기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sup>19)</sup>			
서면투표 실시여부			
전자투표 실시여부 <sup>20)</sup>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17) 결산기를 변경한 법인 혹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가장 최근에 개최된 3개 사업연도의 정기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기재

18)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이 발표되는 기간 외에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미해당'으로 기재

19) 주주총회 집중일이라 함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하며, 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주주총회 분산개최가 인정되는 경우 집중일 이외 개최에 해당하고 ② 추가집중일에 개최한 경우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사전참여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에 노력한 경우에 해당(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이 발표되는 기간 외에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미해당'으로 기재)

20) 전자투표 이용 계약 체결이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에서 활용된 경우에만 'O'로 표시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21)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의결권 행사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비율 (%)	반대기권 등주식수	반대기권 등주식비율 (%)
XX+1기 정기주주총회	...									
1차 임시주주총회										
XX기 정기주주총회										
...										

나.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21)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 가장 최근에 개최된 총회부터 기재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 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주주 제안1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sup>22)</sup>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여부	회신 주요내용
공개서한1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sup>22)</sup>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 요구 등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sup>23)</sup>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sup>24)</sup> 수립 여부

<b>시행 여부</b>	
--------------	--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b>연 1 회 통지<sup>25)</sup> 여부<sup>26)</sup></b>	
--	--

<b>영문자료 제공 여부</b>	
-------------------	--

23) 배당정책은 단순히 당기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 및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예 : 배당 성향), 장기적 배당계획(예 : 2023년 배당 성향 XX%, 2024년 YY%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배당형태(현금, 주식배당 등), 배당시기(중간, 결산 등) 등을 말함. 이런 점에서 배당정책은 당기의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배당실시계획과는 차별점을 지님

24) 배당 이외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을 포함하며, 배당의 경우 배당여부·배당규모 결정에 관한 판단 근거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재

25) 통지는 공시, 주주 개별통지 뿐 아니라 주주총회 및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가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

26)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X'로 기재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sup>27)</sup>

정관반영 여부 28)	
시행 여부 <sup>29)</sup>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30)

	결산월	결산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sup>29)</sup>
1차 배당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제공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27)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회사협회의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실시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

28) 배당절차 개선 관련 상장회사협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29) 현금배당 관련해서 배당액 확정일(배당액 공시일도 포함한다)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을 경우 시행(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 분기배당, 주주제안을 통한 배당은 제외)

30)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실시된 배당순으로 차수를 부여하고, 상단부터 기재(가장 먼저 실시된 배당이 1차 배당)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sup>31)</sup>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 (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sup>32)</sup>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sup>33)</sup>	시가 배당률 <sup>34)</sup> (%)
당기	보통주							
	종류주 <sup>35)</sup>							
전기	보통주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종류주							

3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내역 및 배당 관련 1-5-1-1 및 1-5-1-2 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 (필요한 경우 표 사용 가능)

32)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 이익

33) 1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34) 주주명부 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1주일간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35) 발행 종류주식이 2종 이상인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재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36)>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개별기준(%)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36) 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연결/개별)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sup>37)</sup>>**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sup>38)</sup>	발행비율(%) <sup>39)</sup>	비고 <sup>40)</sup>
보통주			
우선주 <sup>1</sup>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37)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수)

38)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까지 감소(감자, 주식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39)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

40) 공시대상기간 외 보고서 제출일까지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기준일을 명시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sup>41)</sup>

<b>별도행사 개최 여부</b>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sup>41)</sup>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b>시행 여부</b>	
--------------	--

41) 임원(미등기 포함) 참석여부를 포함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b>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b>	
<b>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b>	
<b>영문공시 비율<sup>42)</sup></b>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b>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b>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별점	제재금 (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1차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42) 공시대상기간 동안 KIND 및 DART를 통해 제출된 전체 수시공시(정정공시 포함) 중 영문으로도 공시된 비율을 기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수시공시는 법령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포함하며, 그 외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는 제외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sup>43)</sup>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sup>44)</sup>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43)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 및 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말함

44)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준하여 기재

**[세부원칙 2-③]**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sup>45)</sup>,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sup>46)</sup>**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sup>47)</sup>**

45) 물적분할 포함 (이하 같음)

46) 상기 합병 등이 ① 공시 대상기간 내 완료되었거나, ② 계획되어 수시공시·공정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알려진 경우 'O'로 표기하고, 동 과정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주주보호 관련 사항을 추가로 기재

47) 보고서 제출일 기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존재 여부(조기상환 되어 소각되거나 만기일이 도과하는 등 사정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주식관련 자본조달 사항은 기재 불필요)

-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sup>48)</sup>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sup>49)</sup>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

48) 자본 조달 목적, 발행 규모, 전환 조건 Refixing, 기한이익 상실 정보 등 관련 기타 참고할 사항 기재(조기상환 되어 소각되거나 만기일이 도과하는 등 사정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주식관련 자본조달 사항은 기재 불필요)

49) 해당사항 있는 법인만 기재하며, 관련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3. 이사회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sup>50)</sup>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2) 이사회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50) 심의 의결 사항의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sup>51)</sup>**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sup>52)</sup>**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51) 비상시 선임정책 및 연임 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며 단순히 CEO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나 승계순서, 법령 등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단순한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 준수여부 등은 해당하지 않음)

52) 승계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X'로 표기함. 이하 (3)의 후보 교육 관련 사항도 같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sup>53)</sup>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sup>54)</sup>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sup>55)</sup>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sup>56)</sup>**

53) 세부원칙 3-3의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관련 ‘준수’의 의미는 회사가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① 명문화 하여 ② 실제 실행하고 있음을 의미

54) 여기서 위험이란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개념임 (데이터 보안, 조세,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기후위기 등)

55) 전사적으로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련 조직(위험관리 조직 및 위원회 등)을 설명해야 시행으로 인정됨 (BCP나 안전관리, 보안 등 지엽적인 영역의 규정이나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56) 준법경영 정책이란 윤리경영, 행동강령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 자 이내)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sup>57)</sup>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sup>58)</sup>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sup>59)</sup>	임기 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00								
이00								
...								

57) 이사회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을 의미하며, 조직별 인적구성(\*\*명)을 포함하여 기재

58)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이하 같음)

59)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 회사 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월수로 기재(예 : 2년 8개월 → 32)하며, 재선임 및 과거 선임이력 등 모두 합산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sup>60)</sup>	비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				

<표 4-1-3-2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sup>61)</sup>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김 〇〇				
	이 〇〇				
	...				
보수위원회	박 〇〇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sup>62)</sup>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60)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임원이 존재하여, 위원회별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예 : 홍길동이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겸임시, 각 위원회에 'A', 'B'와 같은 형태로 코드 부여)

61) 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표 4-1-3-1에서 부여한 코드를 이용하여 겸임대상 위원회를 표기

62) 명칭을 불문하고 지속가능경영(ESG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의미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b>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b>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b>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b>	
<b>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b>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이사회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sup>63)</sup>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b>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sup>64)</sup></b>	
<b>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sup>65)</sup></b>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sup>66)</sup>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김OO						
이OO						
...						

63) 성별이나 연령, 경력 등 인적 구성의 다양성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서 정한 임원 다양성 충족 대상 기업인지 기재.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성별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기업이 라면 'O', 해당되지 않는다면 'X'

65) 성별 다양성이 확보된 경우에 'O'로 표기한다.(즉, 모두 같은 성인 경우 'X')

66) [Case1] 각 이사 구분별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홍길동(A), 홍길동(B)” 혹은 “홍길동(70) 홍길동(75)”와 같이 구분하여 생성(‘홍길동’ 하나의 값으로 두 개의 열 생성 불가)

[Case2] 한 명의 이사가 두 개 이상의 구분에 포함될 경우, 홍길동(사외), 홍길동(기타비상 무)와 같이 구분하여 생성(‘홍길동’ 하나의 값으로 두 개의 열 생성 불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 자 이내)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sup>67)</sup>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b>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b>	
<b>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sup>68)</sup></b>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 제공일(①)	주주 총회일(②)	사전 정보제공 기간(일) (②-①)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XX기 정기총회	김 OO 이 OO						
...	...						

67) 이사후보선정에 있어서 독립된 제3의 기구를 이용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이거나 상설기구일 필요는 없음

68)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설치 법인은 '0'으로 기재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sup>69)</sup>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sup>70)</sup>**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69) 사업보고서에 이미 공시된 사항 외에 새롭게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서술

70)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김OO				
이OO				
...				

(2) 미등기 임원 현황<sup>71)</sup>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sup>72)</sup>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sup>73)</sup>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71) 표 4-4-1의 형식을 활용하여, 회사 미등기 임원 현황을 기재

72) 미등기 임원 포함

73)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을 의미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sup>74)</sup>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sup>75)</sup>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

74)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말함

75) 미등기임원을 포함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또는 조치(행정처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 가능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sup>76)</sup>>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김OO		
이OO		
...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76)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과거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월수로 기재  
(예 : 2년 8개월 → 32)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증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sup>77)</sup>			
					겸직기관 <sup>78)</sup>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sup>79)</sup>	겸직기관 상장여부 <sup>80)</sup>
김OO								
이OO								
...								

77) 겸직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심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각 항목별 순서를 유지하되 예시의 형식을 준수하여 기재)

예) 갑을전자와 병정물산에 겸직중인 사외이사의 경우, 겸직기관은 '갑을전자, 병정물산', 겸직업무는 '사외이사, 법무팀장', 겸직기관 근무시작월은 '2020.02, 2021.11', 상장 여부는 '코스닥, 비상장' 등 (단, 실제 기재시 따옴표(‘)는 불필요.)

78) 주식회사를 포함한 상법상 회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특수법인 및 학교 등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포함

79) '2Y년 MM월에 근무시작한 경우, '2Y.MM 으로 기재(예 : '23.03)

80) 비상장인 경우 '비상장', 상장인 경우 시장 구분하여 기재(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sup>81)</sup>을 실시하는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여부**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sup>82)</sup>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81) 단순한 서면, 책자 등 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교육의 경우를 의미

82)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제외하며, 정기/임시 회의 개최 여부 및 그 내역을 포함하여 기재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1회차						
2회차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sup>83)</sup>

**사외이사 개별평가 84)**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85)**

83)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 평가 등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만 시행으로 인정됨

84) 사외이사에 대한 실제 평가 실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에만 시행으로 인정됨

85) 사외이사 개별평가 미실시 시, 'X'로 표기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b>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b>	
----------------------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sup>86)</sup>

<b>스톡옵션 부여 여부</b>	
<b>성과 연동 여부<sup>87)</sup></b>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86)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조건이 해당 사외이사의 평가 등 성과와 연동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설명

8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X'로 표기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 자 이내)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sup>88)</sup> 내용

<b>정기이사회 개최</b>	
<b>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b>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구분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 개최간 기간(일) <sup>89)</sup>	이사 평균 출석률(%)
정기			
임시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88) 이사회 운영 규정 등

89) 각 이사회 안건통지일에서 개최일자까지 기간의 평균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sup>90)</sup>의 수립 및 공개<sup>91)</sup> 여부

<b>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b>	
<b>보수정책의 공개 여부<sup>92)</sup></b>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sup>93)</sup>

<b>시행 여부</b>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b>이해관계자 고려 여부</b>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90) 보수산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개별 이사 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인 경우에만 정책으로 인정됨

91)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 등에게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공개하는지 여부

92) 보수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X'로 표기

93)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한 장치도 함께 설명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sup>94)</sup>	최근 3개년 <sup>95)</sup>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김OO								
이OO								
...								

94) 3개년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3년간 전체 개최 건수 대비 전체 출석 횟수를 의미함. (예 : 최근 3년간 개최 건수가 2회, 3회, 5회이고, 각 2회, 1회, 0회 출석한 경우 3년 평균 출석률은 30% (100%, 33%, 0%를 단순 산술평균한 44%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95) 최근 3개년 중 해당 인원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공란으로 표기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sup>96)</sup>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

96)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 방법으로 각 이사의 활동을 시의성 있게 공개하는 경우에만 인정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sup>97)</sup>**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sup>98)</sup>**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97) 세부원칙 4-1에 기재된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시행으로 인정.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X'로 표기

98)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보상)위원회를 모두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X'로 표기하되, 둘 중 하나의 이사회내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동 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우에는 'O'로 표기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 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sup>99)</sup>

**명문규정 여부**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sup>100)</sup>

**보고 여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회추천위원회 개최 내역><sup>101)</sup>

		개최 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이사-1차	안건1							
	안건2							
	...							
이사-2차								

99) 각 위원회 설치목적과 권한 및 책임, 구성의 자격 및 임면, 성과평가 방법 등

100) 이사회 보고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명

101) 개최항목 생성시 차수 앞에 위원회 코드를 붙여서 생성(예 : 이사-3차)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102)

		개최 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전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리스크-1차	안건1							
	안건2							
	...							
리스크-2차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103)

		개최 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전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내부-1차	안건1							
	안건2							
	...							
내부-2차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102) 개최항목 생성시 차수 앞에 위원회 코드를 붙여서 생성(예 : 리스크-3차)

103) 개최항목 생성시 차수 앞에 위원회 코드를 붙여서 생성(예 : 내부-3차)

## 4. 감사기구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내부감사기구<sup>104)</sup>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김OO				
이OO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sup>105)</sup>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여부<sup>106)</sup>**

104)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감사에 관하여 서술

105) 후보자 선정, 회계, 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여부, 겸직허용 여부 등

106)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 중 회계 또는 재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를 의미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sup>107)</sup> 제공 현황 <sup>108)</sup>

**감사기구 교육 제공**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 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sup>109)</sup>**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sup>110)</sup>**

107) 단순한 서면, 책자 등 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교육의 경우를 의미

108) 공시대상 기간 중 실시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교육이행 여부 등

109)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110)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 등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예 : 감사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불응 시 서면으로 사유 제출 등)에만 해당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sup>111)</sup>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sup>112)</sup>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sup>113)</sup>**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sup>114)</sup>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sup>115)</sup>

**보수 비율**

111)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진단 등은 해당하지 않음

112)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거나 최소한 내부 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113) 지원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X'로 표기

114)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감사위원의 보수내용이나 보수 총액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감사의 보수내용이나 보수 총액이 다른 경우를 의미

115)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인당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법인은 감사의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을 기재 (예 : 감사(위원)이 50,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가 46인 경우, 1.09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sup>116)</sup> 개최 여부**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sup>117)</sup>, 개별이사 출석내역

116)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상근감사의 활동 관련 사항을 기준으로 개최 여부 표기

117) 서면 회의(보고) 제외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sup>118)</sup>	최근 3개년 <sup>119)</sup>		
김OO					
이O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118) 3개년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3년간 전체 개최 건수 대비 전체 출석 횟수를 의미함. (예 : 최근 3년간 개최 건수가 2회, 3회, 5회이고, 각 2회, 1회, 0회 출석한 경우 3년 평균 출석률은 30% (100%, 33%, 0%를 단순 산술평균한 44%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119) 최근 3개년 중 해당 인원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공란으로 표기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 자 이내)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sup>120)</sup>,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sup>121)</sup>

<b>정책 마련 여부</b>	
<b>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b>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개최<sup>122)</sup> 및 각 회의 논의사항<sup>123)</sup>

120) 만약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이 선임된 경우 지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

1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에 'O'로 입력

1. 회계감사 외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 체결
2.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
3. 객관적 보수 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성공 보수) 약정
4.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

122) 서면 회의(보고)는 제외하고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회의만 인정

123)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계획 및 시간, 전문성 등 평가 내용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100자 이내)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1) 경영진 참석 없이<sup>124)</sup>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sup>125)</sup>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sup>126)</sup>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sup>127)</sup>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회차			
...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sup>128)</sup>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sup>129)</sup>

124) 감사대상이 되는 임직원도 참석할 수 없음

125) 1년에 4번이 아니라 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126) 서면 회의(보고)는 제외하고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 회의만 인정

127) 공시대상기간 내 실시한 소통내역을 기재

128) 연간 감사계획,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 등

129)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실적 기재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sup>130)</sup>

<b>재무제표 정기주총 6 주전 제공 여부</b>	
<b>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 주전 제공 여부</b>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131)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XX 기				
XX+1 기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 설명

130)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모두 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만 'O'로 표시

13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공내역을 모두 기재하며, 결산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

##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sup>132)</sup>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b>자율공시 여부</b>	
----------------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 일자	이사회 참여 여부 <sup>133)</sup>	관련 이사회 일자	주요 논의 내용 <sup>134)</sup>
공시-1차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sup>135)</sup>

<b>소통 여부</b>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주요 소통 내용
소통-1차					
...					

13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미

133)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에 보고, 심의 또는 의결 등을 거친 경우 ‘O’로 표기

134) 이사회에서 보고, 심의 또는 의결 등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했는지,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거나 논의결과로 도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주요 의견을 간략히 기재

135) 소통 일자, 소통 대상 및 소통 채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소통시 임원(미등기 포함) 참여 여부도 포함하여 기술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 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sup>136)</sup>

---

136) 기업지배구조 헌장, 이사회 운영규정, 윤리강령, 감사위원회 규정, 보상 위원회 규정 등